

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 작성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검토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p>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현행과 같음)</p> <p>2. “업무담당자”라 함은 사업시행자 소속 직원 중에서 제4조에서 정한 조사자와 확인자(보상전문기관이 보상업무를 수탁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u>보상전문기관의 조사자와 확인자를 말한다</u>)를 말한다.</p> <p>3.·4. (현행과 같음)</p>	<p>제2조(정의) 좌동</p> <p>1. 좌동</p> <p>2. “업무담당자”라 함은 사업시행자 소속 직원 또는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보상관리사 중에서 제4조에서 정한 조사자와 확인자(보상전문기관이 보상업무를 수탁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u>보상전문기관의 조사자와 확인자를 말한다</u>)를 말한다.</p> <p>3.·4. 좌동</p>	<p><u>사업시행자가 보상전문인력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 기본조사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u></p>

개정안	수정안	사유
<p>제4조(업무담당자) ① (현행과 같음) ② <u>확인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및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기본조사서 확인 업무를 부여받은 자로서, 조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기본조사서의 확인을 완료한 때에는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u></p> <p>1. <u>보상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u></p>	<p>제4조(업무담당자) ① 좌동 ② 좌동</p> <p>1. <u>보상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u></p>	<p>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출입통지에서부터 수용재결서에 의한 공탁금 납입까지 통상 업무처리 소요기간이 1년 6월 정도 소요 되어 3년의 기간동안 실제 수행 가능한 사업이 1내지 2개 사업에 불과하여 실제 보상에 편입되는 물건의 종류는 다양한 종류의 물건이 있을 뿐 아니라 과 여러 종류의 민원사례를 경험하고, 실무지식을 보유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기간인 바, <u>실무경력 기간을 최소 5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u></p>

개정안	수정안	사유
	<p>1-2. 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를 작성 하고, 확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를 검정할 수 있는 기관 또는 협회 등에 위임하는 근거 조항이 신설이 필요합니다.</p>	<p>하다고 봅니다.</p> <p>(토지의 취득 업무는 공부조사에서 공탁 및 소유권 이전까지 보통 1년에서 3년이 소요되며, 이 기간 동안 실제 진행 가능한 사업은 1~2개에 불과합니다. 각 현장마다 보상 대상과 민원 사례가 다양하므로, 토지보상법 및 관련법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 분야에 걸친 전문지식 및 경험이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실무 경력 기간을 최소 5년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p> <p><u>(사)한국토지보상관리사협회가</u> 소속 단체 또는 개인회원의 신청을 받아 그 신청자의 <u>실무경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u> 처리하는 것이 <u>효율적인 것으로 합리적인 것으로</u> 봅니다.</p>

개정안	수정안	사유
<p>2. 보상 관련 공인민간자격(「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된 보상 관련 민간 자격을 말한다) 소지자</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1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p>	<p>확인자는 보상관리사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자로 수정 제안 합니다.</p> <p>③·④ 좌동</p> <p>제12조(재검토기한) 좌동</p>	<p>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 확인은 자격소지자라 하더라도 다양한 실무 경험이 선행되어야 확인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p> <p>(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 확인은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도 다양한 실무 경험을 통해 필요한 지식을 습득해야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p>